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9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23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2
---------------------------	---

※ 참고자료

1.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2
2.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조문	13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와 같이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u>“대안교육이용권”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학생의 대안교육수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및 비용 지원에----- -----.</u>

<신 설>

제10조의3(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안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10조의4(대안교육이용권의 사용 등)</u> ① <u>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납을 거부할 수 없다.</u> ③ <u>누구든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대안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대안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대안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대안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교육감의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²⁾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5.9. 기준 267개가 등록되어 있고,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⁴⁾ 결과 총 11,772명이 재학 중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25.9. 기준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초중(통합)	중·고(통합)	초중·고(통합)	기타	합계
학생 수(명)	2,819	1,820	1,797	616	1,235	2,796	689	11,772

자료: 교육부, '24.7. 기준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함.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 한편,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5만원씩⁵⁾ 평생교육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임.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43,6

5) 우수이용자의 경우 최대 70만원

66명, 차상위계층 7,261명 등 50,927명이 바우처를 발급받았고, 국고예산은 28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⁶⁾.

< 소득수준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현황 >

(단위: 명,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발급(지원) 인원	신청 대비 지원율
2019년	3,837	1,646	918	6,401	78.8%
2020년	5,867	2,327	2,180	10,374	76.4%
2021년	9,978	3,446	6,107	19,531	68.4%
2022년	14,581	4,364	15,420	34,365	47.6%
2023년	28,475	5,577	16,957	51,009	52.7%
2024년	43,666	7,261	-	50,927	90.0%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와 같이 대안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발급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에 관한 조문과 유사하나⁷⁾,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만 차이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면서, 바우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6) 동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됨.

7) 참고자료2: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조문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학생들의 대안교육기관 이용 자체를 활성화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에 걸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대안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을 재구성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용권 제도 도입 시 학교 교육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저소득층 대안교육기관 이용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책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데⁸⁾,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⁹⁾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자립지원 등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¹⁰⁾.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

□ 셋째,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¹¹⁾,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718만 원에 달하고 있음.

< 기관별 연간 수업료 분포 >

(단위: %, 만원)

수업료 없음	수업료 있음							평균
		~200만원	200~400 미만	400~600 미만	600~800 미만	800~1,000 미만	1,000만원~	
13.8%	86.2%	5.3%	9.0%	17.3%	33.0%	26.0%	9.3%	718

자료: 교육부, '24.7. 기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이용권을 발급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수업료 등이 인상되는 등 이용권의 혜택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인 대안교육기관 측에 귀착될 가능성이 존재함.

10) 세부내용은 '참고자료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내용' 참조.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일반사립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교비회계 설치, 정보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등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또한, 대안교육기관은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부담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기관 간 학생부담금의 편차가 큰데, 수업료, 입학금 책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교육이용권이 도입되는 경우 학생부담금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 특성과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대안교육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업 중단 가속화 등 공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광주, 경기, 전남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법에도 교육감과 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 및 학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교육청 및 지자체는 학생 급식비, 교육활동 경비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광주)
-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나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이용권을 도입하게 되면 일부 기관이 이용권 지급을 이유로 수업료를 인상하거나, 현재 무상으로 운영 중인 기관까지 유상 전환하는 등 교육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광주)
-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는 기관의 운영형태나 운영주체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의 가용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움(경기)
- 또한 대안교육이용권은 대부분 기관 교원 인건비로 충당될 여지가 큰데, 교원자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경기)
- 소외계층 학생일수록 공교육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대안교육이용권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가속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교육 제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음(광주, 경기)
-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의 책임성이 약하며,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대안교육이용권의 대상자는 소외계층으로 한정 필요(전남)

○ 제주교육청: 일부수정 -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므로 재정지원의 주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함
○ 대구교육청: 일부수정 - 무분별한 이용권 발행은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의 이탈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교육이용권 대상자 선정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교육비를 받는 대안교육기관도 있으므로 지원상한액 설정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두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개정안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등 자료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므로, 안 제10조의3제3항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할 필요
○ 국세청: 일부수정 -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81의13① 비밀유지에 따라 자료제공이 불가하나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같은조항 제1호~제9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법률 개정(안) 제10조의3 제3항에 과세정보의 요구기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 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수정안 : 안 제10조의3③ “국가 및 지자체” → “교육부 장관 및 지자체의 장”) - 또한 대통령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할 때 국세청 소관국실과 협의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 추진배경

- 성인 학습자의 중단없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성인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18년~)

※ 평생학습 참여율('24) : (월소득 500만원 이상) 37.2% vs (150만원 미만) 28.0%
(대졸이상) 40.4% vs (중졸이하) 22.6%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평생교육강좌(디지털강좌 포함)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25년 약 10만3천명, 1인당 35만원* 지원
* 광역지자체별 1인당 35만원 지원(변경 불가), 예산가능범위내 우수이용자 추가지원 가능
※ 일반 이용자 지원인원 : ('18년) 4,496명 → ('19년) 6,401명 → ('20년) 10,374명 → ('21년) 22,528명 → ('22년) 42,874명 → ('23년) 60,001명(우수이용자 포함) → ('24년) 62,351명(우수이용자 포함)
- **(사업예산)** '25년 출연금 25,713백만원(지자체 대응투자 별도)
※ 일반(지역특화·디지털 대상 20,948백만원, 노인 대상 1,764백만원, 운영비 3,001백만원)
- **(사용기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3,241개소('24.12기준)
※ 지자체 중심 사업 개편에 따라 사용기관 수 변동 가능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성인단계 교육복지)** 사용강좌내용은 주로 학력보완교육·직업능력교육이며, 저소득층 성인의 교육소외현상을 방지하는 효과
- 대부분의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대부분은 중·장년층
※ 연령 비율: 40대(33.3%) > 50대(23.1%) > 30대(15.9%) > 60대 이상(16.1%) > 20대(11.6%)
- **(삶의 질 향상)** 이용권 이용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식 및 학습 참여 의지제고에 도움
※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 제고(4.578점, 5점 만점), 학습참여 의지 제고(4.47점, 5점 만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참 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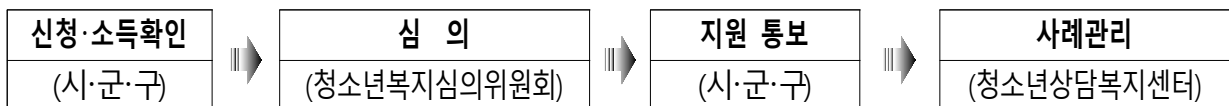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지원 가능
- **(추진 체계)**



□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월 15만원(수업료)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